청렴韓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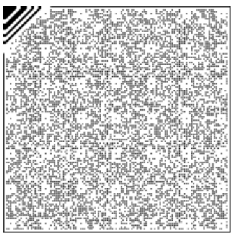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잠정 집행정지 안내

1. **다음 관련입니다.**

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지 제2024-33호, 2024.02.28)
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2024.02.28)
다.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309, 지역의료정책과-310
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잠정인용 결정(2024.3.5)

2. 2024년 2월 28일 고시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 2024-33호)」**와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 2024-34호)」**에 대한 법원의 잠정집행정지 인용결정(2024.3.5)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 2024-33호)」**내 **「 관절경 수술 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11개 항목**(중분류코드 250099)에 대하여 변경 전 **본인부담률 80%** 적용

나.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 2024-34호)」**내 **「 별지1 상한금액 등의 조정품목」** 내 **아주약품(주)**(치료재료 코드 M2099004)에 대하여는 변경 전 상한금액 148,720원 적용

* 2024.3.22(금)까지 변경 전 본인부담률 및 상한금액 유지,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주)아주약품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 귀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귀하, 대한한의사협회장 귀하, 대한병원협회장 귀하, 대한치과병원협회장 귀하, 대한약사회장 귀하, 대한한방병원협회장 귀하,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장, 서울특별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대구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국립중앙의료원장, 국립암센터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부곡병원장, 국립춘천병원장, 국립공주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재활원장, 보건복지부장관(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 질병관리청장, 국립마산병원장, 국립목포병원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귀하,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주무관	**유미정**	보건사무관	**이정우**	지역의료정책과장	전결 2024. 3. 6. **강준**

협조자

시행 지역의료정책과-334 (2024. 3. 6.)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685 팩스번호 044-202-3983 / kkbymj12@korea.kr / 비공개(5)

행복을 연결합니다 힘이되는 129